

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
(황운하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9335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6. 18.

발 의 자 : 황운하 · 신장식 · 박은정  
정준호 · 이해민 · 윤종오  
정혜경 · 김재원 · 장경태  
강경숙 · 김선민 의원  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선거 과정에서 투표용지 부족 및 투표지 발급 지연 등 선거사무 수행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여 유권자의 참정권 행사에 불편을 초래하고 선거관리의 신뢰성을 저해하였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.

특히 선거 과정에서 투표용지 최소 인쇄기준이 위원회의 심의·의결 없이 변경되는 등 선거관리의 핵심 기준과 지침이 사무처 내부 절차에 따라 운영됨으로써 선거관리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.

그러나 현행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선거사무를 총괄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, 선거용 물품·장비·인력 등의 확보 및 운영에 대한 관리책임과 선거관리상 중대한 장애 발생 시 보고의무 및 재발방지 조치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, 선거관리의 핵심 기준과 지침의 변경에 대한 위원회의 통제장치도 미흡한

실정임.

이에 사무총장의 선거관리 책임과 보고의무를 명확히 하고, 선거관리의 핵심 기준 및 지침의 제정·변경은 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선거관리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임(안 제13조의 2등 신설).

##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의2 및 제1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3조의2(선거사무 관리책임) ① 사무총장은 투표용지, 투표함, 기표용구 등 선거에 필요한 물품이 원활히 공급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.

② 선거일 또는 사전투표기간 중 선거사무의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 사무총장은 지체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의 보고를 받은 경우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을 수립·공표하여야 한다.

④ 사무총장은 선거사무의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 30일 이내에 원인 및 재발방지대책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3조의3(중요 선거관리사항의 심의·의결)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야 한다.

1. 투표용지·투표함 등 주요 선거물품의 수급기준의 제정 및 변경
2. 선거관리 매뉴얼의 제정 및 변경
3. 선거사무 처리기준의 제정 및 변경
4. 그 밖에 선거관리의 공정성 및 안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

② 사무총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 
미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     행	개      정      안
<p><u>&lt;신    설&gt;</u></p>	<p><u>제13조의2(선거사무 관리책임) ①</u>  <u>사무총장은 투표용지, 투표함,</u>  <u>기표용구 등 선거에 필요한 물</u>  <u>품이 원활히 공급되도록 관리</u>  <u>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②선거일 또는 사전투표기간</u>  <u>중 선거사무의 중대한 장애가</u>  <u>발생한 경우 사무총장은 지체</u>  <u>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</u>  <u>고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③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</u>  <u>의 보고를 받은 경우 원인조사</u>  <u>및 재발방지대책을 수립·공표</u>  <u>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④사무총장은 선거사무의 중대</u>  <u>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 30일</u>  <u>이내에 원인 및 재발방지대책</u>  <u>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</u>  <u>고하여야 한다.</u></p>
<p><u>&lt;신    설&gt;</u></p>	<p><u>제13조의3(중요 선거관리사항의</u>  <u>심의·의결) ① 다음 각 호의</u>  <u>사항 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</u>  <u>의 심의·의결을 거쳐야 한다.</u></p>

1. 투표용지·투표함 등 주요 선거물품의 수급기준의 제정 및 변경

2. 선거관리 매뉴얼의 제정 및 변경

3. 선거사무 처리기준의 제정 및 변경

4. 그 밖에 선거관리의 공정성 및 안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

② 사무총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.